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농어촌소득개발기금" 다음에 "(("이하 개발기금"이라 한다)"를 삽입한다

제6조제2항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5조에 관한 사업비 용자를 받지 않은 자를 우선한다)"를 삭제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가 시군별로 지원품목과 개발기금을 배정하면 시장·군수는 규칙에 의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중 "이천만원 이내로 한다"를 "이천만원 이내로 하며 작목반등 농어민조직의 지원한도액은 1억원이내로 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농어촌개발국"을 "농정국"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중 "농어촌개발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농어촌개발국장"을 "농정국장"으로 하고, "다음 회계년도 1월말 까지"를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